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899호 2023. 2. 15.(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3-23호 거창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2

거창군 고시 제2023-26호 도로명주소 고시 6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3-270호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 규정안 7

거창군 공고 제2023-282호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 14

거창군 공고 제2023-289호 공 시 송 달 23

거창군 공고 제2023-294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7

회 략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023년 2월 9일

거 창 군 수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 내역

- 가축사육 제한구역 총괄 내역 (㎡)

연번	행정명	변경 전 (2018.2.)			변경 후 (2023.2.)		
		전체면적	가축사육 제한구역		전체면적	가축사육 제한구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	거창읍	55,745,004	48,858,137	87.6%	55,427,042	48,862,928	88.2%
2	주상면	50,022,797	36,628,490	73.2%	49,828,478	36,815,187	73.9%
3	웅양면	58,507,448	42,960,382	73.4%	58,418,248	43,262,576	74.1%
4	고제면	58,423,231	38,261,823	65.5%	58,461,295	38,449,769	65.8%
5	북상면	125,249,445	80,137,416	64.0%	123,284,964	79,533,910	64.5%
6	위천면	53,868,911	28,131,310	52.2%	53,813,531	28,275,949	52.5%
7	마리면	46,593,983	33,834,999	72.6%	46,262,041	34,438,192	74.4%
8	남상면	68,493,035	47,811,395	69.8%	68,084,735	48,502,349	71.2%
9	남하면	49,798,017	30,752,186	61.8%	49,537,657	30,862,071	62.3%
10	신원면	72,737,785	48,357,341	66.5%	73,753,854	49,238,693	66.8%
11	가조면	66,073,737	39,058,244	59.1%	65,920,414	40,145,757	60.9%
12	가북면	96,221,263	58,365,710	60.7%	96,114,258	60,101,019	62.5%
합계		801,734,656	533,157,434	66.5%	798,906,517	538,488,400	67.4%

○ 가축사육 제한구역 세부 내역

(㎡)

행정명	변경	행정 면적	전부 제한구역	일부 제한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이내	주거밀집지역에서 300m이내	주거밀집지역에서 800m이내	
거창읍	기정	55,745,004	11,920,873	21,770,432	28,523,021	47,746,234	48,858,137
	변경	55,427,042	11,858,539	23,164,182	30,260,193	48,019,688	48,862,928
	증감	-317,962	-62,334	1,393,750	1,737,172	273,454	4,791
주상면	기정	50,022,797	-	8,533,828	13,433,120	36,628,490	36,628,490
	변경	49,828,478	-	8,512,213	13,273,298	36,815,187	36,815,187
	증감	-194,319	-	-21,615	-159,822	186,697	186,697
옹양면	기정	58,507,448	410,199	11,178,843	17,527,941	42,960,382	42,960,382
	변경	58,418,248	342,121	11,504,078	17,959,939	43,262,576	43,262,576
	증감	-89,200	-68,078	325,235	431,998	302,194	302,194
고제면	기정	58,423,231	-	8,358,048	13,474,343	38,261,823	38,261,823
	변경	58,461,295	-	8,381,345	13,525,749	38,449,769	38,449,769
	증감	38,064	-	23,297	51,406	187,946	187,946
북상면	기정	125,249,445	36,836,974	8,934,981	14,193,661	44,272,521	80,137,416
	변경	123,284,964	35,783,943	9,220,639	14,595,154	45,368,577	79,533,910
	증감	-1,964,481	-1,053,031	285,658	401,493	1,096,056	-603,506
위천면	기정	53,868,911	-	8,277,509	12,342,115	28,131,310	28,131,310
	변경	53,813,531	-	8,438,700	12,574,079	28,275,949	28,275,949
	증감	-55,380	-	161,191	231,964	144,639	144,639
마리면	기정	46,593,983	1,279,949	9,291,677	14,531,759	32,953,665	33,834,999
	변경	46,262,041	1,261,435	9,711,631	15,000,944	33,626,929	34,438,192
	증감	-331,942	-18,514	419,954	469,185	673,264	603,193
남상면	기정	68,493,035	779,466	11,732,870	19,029,177	47,811,395	47,811,395
	변경	68,084,735	780,015	12,280,552	19,666,483	48,502,349	48,502,349
	증감	-408,300	549	547,682	637,306	690,954	690,954
남하면	기정	49,798,017	9,853	5,985,825	9,575,517	30,743,727	30,752,186
	변경	49,537,657	9,771	6,238,242	9,831,323	30,853,688	30,862,071
	증감	-260,360	-83	252,417	255,806	109,961	109,885
신원면	기정	72,737,785	-	10,211,658	16,698,083	48,357,341	48,357,341
	변경	73,753,854	-	10,918,278	17,469,964	49,238,693	49,238,693
	증감	1,016,069	-	706,620	771,881	881,352	881,352
가조면	기정	66,073,737	2,655,748	13,558,816	19,649,874	38,866,445	39,058,244
	변경	65,920,414	2,636,934	13,747,063	19,984,561	39,956,708	40,145,757
	증감	-153,323	-18,814	188,247	334,687	1,090,263	1,087,513
가북면	기정	96,221,263	2,185,197	10,553,220	17,467,302	56,728,657	58,365,710
	변경	96,114,258	2,182,716	11,455,972	18,937,396	58,525,997	60,101,019
	증감	-107,005	-2,481	902,752	1,470,094	1,797,340	1,735,309
합계	기정	801,734,656	56,078,259	128,387,707	196,445,914	493,461,990	533,157,434
	변경	798,906,517	54,855,474	133,572,894	203,079,083	500,896,109	538,488,400
	증감	-2,828,139	-1,222,785	5,185,188	6,633,169	7,434,120	5,330,966

3.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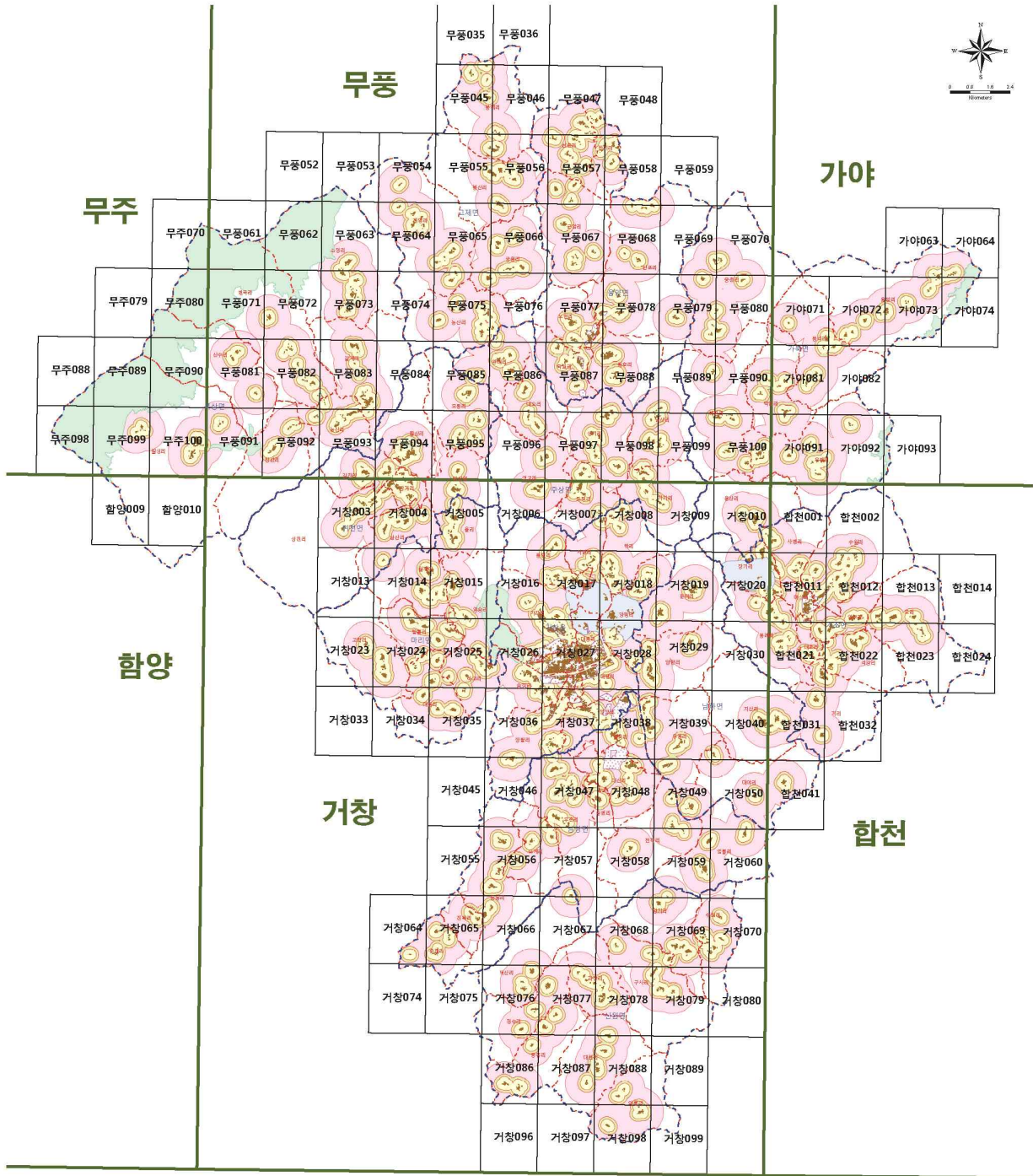
- 거창군 환경과(4층)에 비치 및 한국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4. 이해관계인은 거창군 환경과(☎940-3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총괄도

○ 변경 전

거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총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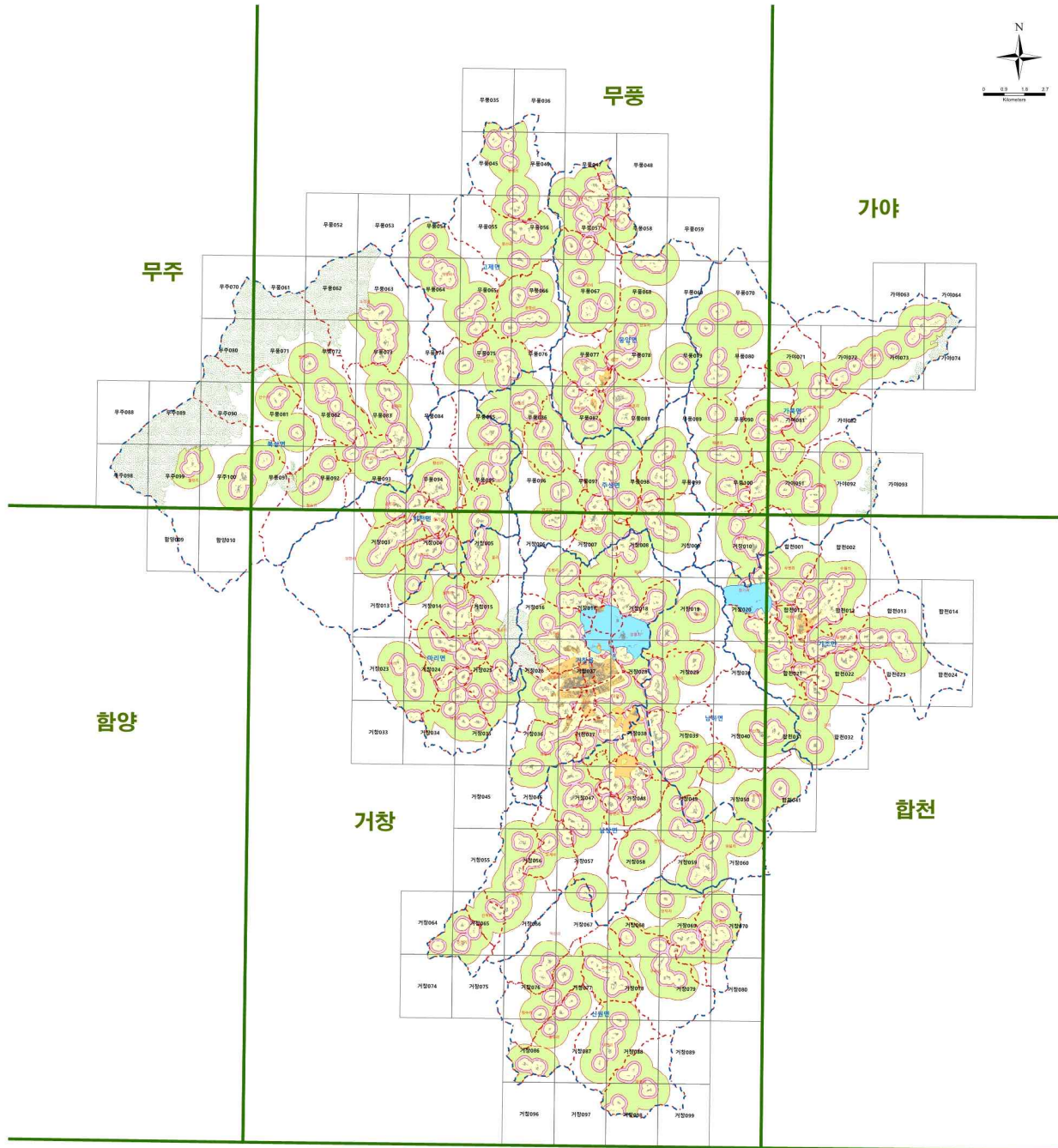
범례

	INDEX		자연공원
	읍면경계		주거밀집지역
	리경계		주거밀집지역 200m 이내 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주거밀집지역 300m 이내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거밀집지역 800m 이내 지역

6. 총괄도

○ 변경 후

거창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총괄도



행정구역



위치도



범례

	INDEX		자연공원
	읍면동경계		주거밀집지역
	리경계		주거밀집지역에서 200m 이내 지역
	도시지역		주거밀집지역에서 300m 이내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거밀집지역에서 800m 이내 지역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2. 15.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병산1길 151 등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4)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 규정안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2. **개정이유** : 당직근무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현행 5일에서 10일로 휴무(休務)일을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당직근무자 휴무일 확대
 - 1) 현행: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 2) 변경: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1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
4. **의견제출**
 - 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55-940-3179), 이메일(rlove0228@korea.kr)
- 다. 제출기한 : 2023. 3. 7.(화) 18:00까지 도달
- 라. 제출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 마. 문의전화 : 055-940-3192

-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 2.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정안 1부.
 -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규 칙 명 :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개정 규정안

거창군 공무원 당직과 비상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군수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 근무자(재택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군수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숙직근무자(재택당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를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일직·숙직 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에 하루를 지정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u></p>	<p><u>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군수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 근무자(재택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를 휴무하게 해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u></p>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삭제 2010.11.30>

⑤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시행 2023. 1. 20.] [총리령 제1854호, 2023. 1. 20., 일부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과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군(各軍), 경찰

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의 장은 제13조부터 제47조까지의 당직·비상근무 및 연락체계의 유지에 관하여 별도로 자체 근무규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 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2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 10. 31., 2023. 1. 20.>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시행 2023. 1. 20.] [총리령 제1854호, 2023. 1.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당직근무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하고, 체계적인 비상근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4조제2항 중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를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로,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를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 동안 휴무(休務)하게 해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당직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3-282호]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 공고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주택단지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2월 14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거창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 사업명 : 2023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 예산액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3. ~ 12.
- 지원대상 :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 ※ 단,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하며,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해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곳은 제외
- 지원조건 : 보수(공사)비의 50% 보조금 지원
 - ※ 세대규모별 지원한도 ~100세대 : 2,000만원, 101세대 ~ 300세대 : 3,000만원, 301세대 ~ : 5,000만원

2.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 지원내용 :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보수비 지원
 - (※ 신규 시설물 설치는 제외)
 - 공동주택 지붕·내벽·외벽 유지보수공사
(외벽도장, 옥상방수, 균열보수, 노후관 교체 등)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 경비실 등 관리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어컨 설치 등) ☞도 우선지원 대상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물막이판 등) 및 화재 등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도 우선지원 대상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관리
- 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 주기 15년이 경과 된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교체

※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과 개별사업으로 순위선정, 세대규모별 지원한도도 별도적용[20백만원/대(최대 50%범위 내, 단지 당 1억5천한도)]

○ 선정기준

-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기준 적합 여부
- 담당부서에서 신청서류 1차 검토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단지 선정

※ 2023년 거창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선정 순위 외 단지 중 지원자격 및 순위에 따라 2023년 경남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신청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자격 :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150세대미만, 300세대 미만의 승강기 미설치 및 개별난방방식 공동주택)

● 우선지원 대상

- 경비실 등 관리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어컨 설치 등)
-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물막이판 등) 및 화재 등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도 우선지원 대상 내용으로 사업 신청하여 선정 될 시 차후 2024년도 선정평가표 사업 실적에 해당하지 않음.

3. 신청방법

○ 신청 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3. 2. 14 ~ 2023. 3. 3일한
- 접수장소 : 거창군청(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 지원신청서상 구비서류(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임대 의결서, 산출근거 등)
 - ※ 관계법령 의무제출 서류 포함(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

4. 신청단지 심사 및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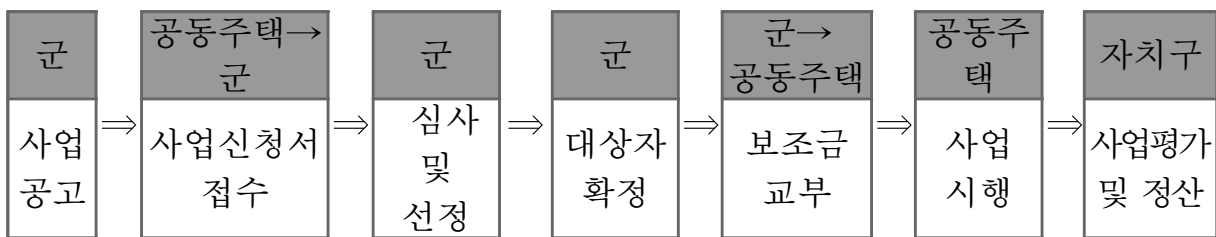
○ 심사기준 및 방법

-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기준 적합 여부
- 담당부서에서 신청서류 1차 검토
- 심의위원회(공동주택 및 지방보조금) 심의 후 대상단지 선정

○ 선정 결과 통보

- 대상단지 선정 결과 및 보조금 교부 결정 개별 통보

5. 사업추진 절차 흐름도



6.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결정 받은 단지는 보조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 (☎055-940-36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끝.

[별지 서식]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1. 신청인	공동주택 단지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사용검사일 (준공일)	
2. 신청내용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예정기간				
총 사업비				
보조신청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그 밖에				
「거창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3월 일				
신청인(관리주체): (인)				
확인(입주자대표):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류 및 주민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자기자본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				

사업계획서

1. 사업명 : 2023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2. 공동주택 현황

- 공동주택 명 :
- 위 치 :
- 준공일자 :
- 규 모 : 동 세대

전용면적	합계	m ²	m ²	m ²	m ²
세대수					

- 대표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
- 연락처 :
- ※ 건축물관리대장 별첨

3. 사업내용(상세히 기술)

-
-
- ※ 아파트 현황 사진 별첨

4. 보조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5. 사업비 : ○○○천원

- 재원별 (단위 : 천원)

합계	보조	자부담	비고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를 첨부하거나 상세히 기술)
- 예) 공용급수관 교체 : m × 천원 = 천원
-

6. 사업시행계획

예)

- 2023. 3. : 사업비 확보
- 2023. 4. : 실시설계 및 사업자 선정
- 2023. 5. : 계약 및 사업 착수
- 2023. 8. : 사업완료
- 2023. 9. : 사업비 정산

7. 기대효과

-
-

8. 붙 임

- 자부담 확보 통장 사본 1부.(확보된 아파트 단지만 해당)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자부담 협약서 1부.
- 건축물관리대장 사본 1부.
- 견적서 사본 1부. 끝.

(예시1)

입주자대표회의 등 사업신청 의결 및 자부담 협약서

1. 공동주택 개요

○ 아파트 명 :

○ 위 치 :

○ 규 모 : 동 세대

- 평형대 : 40㎡이하 ○○○세대, 40~60㎡ ○○○세대, 60㎡이상 ○○○세대

2. 사업 내용

○ 예) 공용급수관 교체 : m × 천원 = 천원

경로당 벽체보수 : m² × 천원 = 천원

3.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계	군비(50%)	자부담(50%)	비고

4. 아파트 자체부담 약정액 : 금 천원

본 ○○아파트 ○○○○○○는 2021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자부담분 금 ○○○○천원을 반드시 확보, 동 사업에 사용할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의결 및 협약합니다.

2023년 월 일

확 약 인 : ○○아파트 ○○○○○○ 대표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거창군수 귀하

(예시2)

주민 동의 및 결의서

2023년 03월 ___일 거창군 거창읍_____, _____아파트 주민의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_____아파트의 _____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참석한 전원 동의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아래 사람을 본 사업의 대표자로 선임하여 사업추진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1. 아파트 소재지

-주 소:

2. 대 표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3. 아파트주민 명단

연번	호수	성명	주소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23년 03월 일

_____아파트 주민일동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선정평가표

구 분	평가기준		기준 점수	평가 점수	비 고
계	5개 항목		100점		○ 동일 점수 시 최근보조금 지원이력에 따라 후순위로 평가
예 산 확 보 (20점)	자부담 확보(통장사본)		20점		○신청일 기준 확보율 -10% 미확보마다 2점 감점 ○확보·확약서 중 적용
	자부담 확약서		10점		
사 업 시급성 (30점)	안전점검 관련 비용(보수 포함)		30점		○주 사업내용 기준 ○시군에서 사업내용 확인 후 평가
	공용부분 시설물 보수(주건물)		25점		
	그린에너지 관련 설치 및 보수		20점		
	공용부분 시설물 보수(부속건물)		15점		
	신규 사업 및 기타		10점		
아파트 규 모 (20점)	세대수	100세대 미만	10점		○규모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유리한 점수 적용
		100세대 이상 ~ 150세대 미만	5점		
		150세대 이상	3점		
	전용 면적	40㎡ 미만 100%	10점		
		40㎡ 미만 50%이상	7점		
		40㎡ ~ 65㎡ 50%미만	5점		
		65㎡ ~ 85㎡	3점		
경 과 연 수 (15점)	30년 이상		15점		○준공일 기준 ○해당사항 없을 시 0점처리
	25년~30년 미만		10점		
	20년~25년 미만		5점		
사 업 실적 (15점)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사업 이력 없음		15점		○국, 도, 시·군 보조금을 모두 포함 ○기준일 : 시·군 공문 접수일 ○해당사항 없을 시 0점처리
	3년 이내 보조금 지원 사업 이력 없음		10점		
	1년 이내 보조금 지원 사업 이력 없음		5점		

공 시 송 달

아래 지방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납기를 2023년 3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오니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기한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3년 2월 15일

거창군수

◆ 공시송달 대상자 ◆

연 번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세목	년도	기분	세 액	비 고
1	김*성	인천광역시 중구	2019년 08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12,090	폐운부재
2	김*성	인천광역시 중구	2019년 04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64,820	폐운부재
3	김*성	인천광역시 중구	2019년 0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86,420	폐운부재
4	김*성	인천광역시 중구	2018년 12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56,840	폐운부재
5	김*성	인천광역시 중구	2018년 1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34,870	폐운부재
6	김*성	인천광역시 중구	2018년 10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27,580	폐운부재
7	김*성	인천광역시 중구	2018년 09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21,000	폐운부재
8	김*성	인천광역시 중구	2018년 08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99,620	폐운부재
9	김*성	인천광역시 중구	2018년 06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72,240	폐운부재
10	김*성	인천광역시 중구	2018년 04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609,220	폐운부재
11	김*성	인천광역시 중구	2018년 03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40,810	폐운부재
12	김*성	인천광역시 중구	2018년 0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803,560	폐운부재
13	김*성	인천광역시 중구	2017년 12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55,170	폐운부재
14	김*성	인천광역시 중구	2017년 10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414,570	폐운부재
15	김*성	인천광역시 중구	2017년 09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79,110	폐운부재
16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8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818,370	이사감
17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8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498,180	이사감
18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7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500,310	이사감
19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7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000,610	이사감
20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7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50,040	이사감
21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6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677,130	이사감
22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6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50	이사감
23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6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51,970	이사감

◆ 공시송달 대상자 ◆

연 번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세 목	년도	기분	세 액	비 고
24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6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51,400	이사감
25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5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61,630	이사감
26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5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02,040	이사감
27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4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688,300	이사감
28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3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858,500	이사감
29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3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03,930	이사감
30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96,310	이사감
31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77,170	이사감
32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62,160	이사감
33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12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62,870	이사감
34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1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8,530	이사감
35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1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74,110	이사감
36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1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69,390	이사감
37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10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01,750	이사감
38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10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04,310	이사감
39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10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468,850	이사감
40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09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57,610	이사감
41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09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4,560	이사감
42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08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57,910	이사감
43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08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89,590	이사감
44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07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69,870	이사감
45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06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34,150	이사감
46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05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52,960	이사감
47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03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59,450	이사감
48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03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97,300	이사감
49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02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24,260	이사감
50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02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96,300	이사감
51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0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29,740	이사감
52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7년 12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69,030	이사감
53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7년 12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85,910	이사감
54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7년 1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17,020	이사감
55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7년 09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60,160	이사감
56	손*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7년 06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161,190	이사감
57	이*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8년 08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69,500	폐문부재
58	이*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7년 10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443,970	폐문부재
59	이*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7년 10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417,400	폐문부재
60	이*준	서울특별시 은평구	2017년 10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8,460	폐문부재
61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0년 06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22,060	이사감
62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0년 07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42,040	이사감
63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0년 06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113,520	이사감
64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0년 05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23,050	이사감
65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0년 03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439,320	이사감
66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20년 03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4,436,670	이사감
67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1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5,020	이사감

◆ 공시송달 대상자 ◆

연 번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세 목	년도	기분	세 액	비 고
68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1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40,170	이사감
69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8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92,370	이사감
70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8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1,890	이사감
71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8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998,860	이사감
72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8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52,140	이사감
73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8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548,330	이사감
74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8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71,870	이사감
75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8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49,710	이사감
76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8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990	이사감
77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7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52,090	이사감
78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7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80,180	이사감
79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7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96,780	이사감
80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7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570	이사감
81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7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3,640	이사감
82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7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0,410	이사감
83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7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22,580	이사감
84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6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926,020	이사감
85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6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7,350	이사감
86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6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6,840	이사감
87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6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96,280	이사감
88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6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657,850	이사감
89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5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80	이사감
90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5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742,490	이사감
91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5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76,770	이사감
92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5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38,410	이사감
93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5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63,670	이사감
94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5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505,700	이사감
95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4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717,270	이사감
96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4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21,770	이사감
97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4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677,610	이사감
98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3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90,590	이사감
99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3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75,280	이사감
100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3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39,590	이사감
101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3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672,930	이사감
102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3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22,340	이사감
103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2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28,000	이사감
104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2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454,140	이사감
105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2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460	이사감
106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2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515,070	이사감
107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2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71,680	이사감
108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45,580	이사감
109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410	이사감

◆ 공시송달 대상자 ◆

연 번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세 목	년도	기분	세 액	비 고
110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77,780	이사감
111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5,140	이사감
112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9년 01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94,310	이사감
113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12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208,350	이사감
114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12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136,200	이사감
115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12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609,170	이사감
116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12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43,900	이사감
117	(주)엔에스티와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2018년 12월 귀속 담배소비세	2023	수시	309,100	이사감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1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어르신들에게 목욕비 및 이용·미용 비용 지원 금액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위생적이고 인간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욕 및 이용·미용 비용 지원 금액 확대(안 별표)

- 1) 현행: 분기 1명당 54,000원
- 2) 변경: 분기 1명당 63,000원

4. 예고기간 : 2023. 2. 15.(수) ~ 3. 7.(화)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복지정책과)

다. 전화 055-940-3092, 팩스 055-940-3089, 이메일 salguc@korea.kr

라.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055)940-30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 목욕 및 이용·미용 비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원)

구분		1분기/ 1명당	2분기/ 1명당	3분기/ 1명당	4분기/ 1명당
지원 금액	목욕 및 이용· 미용 비용	<u>63,000</u> 54,000	<u>63,000</u> 54,000	<u>63,000</u> 54,000	<u>63,000</u> 54,00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효도권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로서 85세 이상인 사람(이하 “효도권 이용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목욕 및 이용·미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효도권 이용자는 군과 협약한 목욕업소 및 이용·미용업소(이하 “효도권 지원사업자”라 한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효도권 지원사업자는 효도권 이용자가 그달 이용한 효도권 이용명부를 근거로 효도권 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효도권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1. 효도권 이용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효도권 이용명부의 허위작성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권을 이용하거나 효도권 비용을 지원 신청한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